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57198(본소), 2024가단5257204(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신원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변론 종결2024. 12. 5.

판결 선고2024. 12.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제작사이고, 피고는 영화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이다.

나. 원고는 영화(가제 C) 제작을 위하여, 2022. 2. 4. 피고와 사이에 기본보수를 35,000,000원으로 정한 감독계약(이하 '이 사건 감독계약'이라 한다) 및 업무수행의 대가(집필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 시나리오 각색 계약(이하 'C 시나리오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22. 2. 7. 피고에게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른 기본보수의 선수금으로 9,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19. 피고와 C 시나리오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C 시나리오의 권리 귀속 관계와 그때까지 피고의 시나리오 집필에 따른 집필료를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른 집필료로 4,83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새로운 영화(가제 D) 제작을 위하여, 2022. 6. 13. 피고와 사이에 집필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 시나리오 각색 계약(이하 'D 시나리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6. 23. 피고에게 D 시나리오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9,6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독계약은 C 시나리오 계약이 합의해지 되면서 같이 합의해지 되었고, D 시나리오 계약 역시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금 9,670,000원과 D 시나리오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9,670,000원의 총 합계 19,34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감독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위 기초사실과 앞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영화감독 작업은 원래 시나리오 완성을 전제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점, 원고는 피고와 C 시나리오 계약과 이 사건 감독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면서 시나리오 완성작업과 감독 작업 모두를 피고에게 맡긴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감독계약은 C 시나리오 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C 시나리오 각색 작업 진행 도중에 비슷한 내용의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로부터 들어 알게 되면서 C 영화 제작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서 C 시나리오 계약을 합의해지하기에 이른 것인 점, 이러한 합의해지 경위에 비추어 그 당시에 원, 피고 모두 C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감독 계약 역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C 시나리오 계약의 합의해지와 더불어 이 사건 감독계약 역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독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은 선수금 9,670,000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C 시나리오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4,83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에 새로운 영화(가제 D) 제작을 위하여 피고와 D 시나리오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9,67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자신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위 정산금이나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선수금을 반환받는 대신 새로운 영화 제작을 위한 감독 업무를 피고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그 증거금 내지 선수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하였을 개연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영화에 해당하는 'D'에 대한 시나리오 계약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해지 된 이상 그 감독 업무에 대한 계약 역시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불발되거나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D 시나리오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위 기초사실과 앞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2. 9. 19.경 D 시나리오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D 시나리오 저작권을 가지되, 대신 지급받은 D 시나리오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계약금 9,670,000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해지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른 보수 미지급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조건부인데, 원고가 이러한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조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독계약 및 D 시나리오 계약 해지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은 돈 총 19,340,000원(=9,670,000원 + 9,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계약을 하면서 정산 집필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하되 우선 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5,000,000원은 추후 예정된 D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반영하여 D 시나리오 계약서에서 총 집필료 액수를 D 시나리오 집필료 25,000,000원과 위 미지급 정산 집필료 5,000,000원을 합친 3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 시나리오 집필료로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 집필료 중 미지급금 5,000,000원, D 시나리오 집필료 중 미지급금 15,000,000원, 이 사건 감독계약에 따른 보수 중 미지급금 25,000,000원, 합계 4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정산 집필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감독계약 및 D 시나리오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홍도